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28
----------	-------

발의연월일 : 2025. 11. 7.

발 의 자 : 강선우 · 윤호중 · 한병도
한정애 · 임호선 · 김영호
서미화 · 김 윤 · 김윤덕
강준현 · 허종식 · 허 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청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질병 등에 시달리는 부모를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없음.

이에 현행법에 ‘가족돌봄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촉진 등 다양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3조,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3항 등).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족돌봄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부양 능력이 있는 직계존속이 존재하는 청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4조제6항 중 “청년에”를 “청년, 가족돌봄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청년에”를 “청년, 가족돌봄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부는 취약계층 청년, 가족돌봄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청

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별도로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청년의”를 “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서
의 회복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중 “청년의”를 “청년, 가족돌봄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청
년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u><신 설></u>	제3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u>가족돌봄청년</u> ”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부양능력이 있는 직계존속이 존재하는 청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u><신 설></u>	7. “ <u>은둔형 외톨이 청년</u> ”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6. · 7. (생 략)	8. · 9.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⑤ (생 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생략)

③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③ (생략)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⑥ -----

-----청년, 가족돌봄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청
년, 가족돌봄청년 및 은둔형 외
톨이 청년에-----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

-----. 이 경우 정부는 취약
계층 청년, 가족돌봄청년 및 은
둔형 외톨이 청년의 고용·주
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별도로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의 질 향상)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u>청년의</u>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 질 향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u>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u> <u>청년의</u>----- ----- -.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생 략) <신 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서의 회복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u>청년의</u>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u>청년, 가족돌봄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u>----- ----- -----.